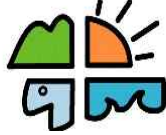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726호 2012년 10월 19일(금)

조 례

-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공 고

-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17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10월 18일

속초시조례 제2306호

속초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9조의 용도 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물,

지하 또는 지상위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를 포함한다)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등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등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의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 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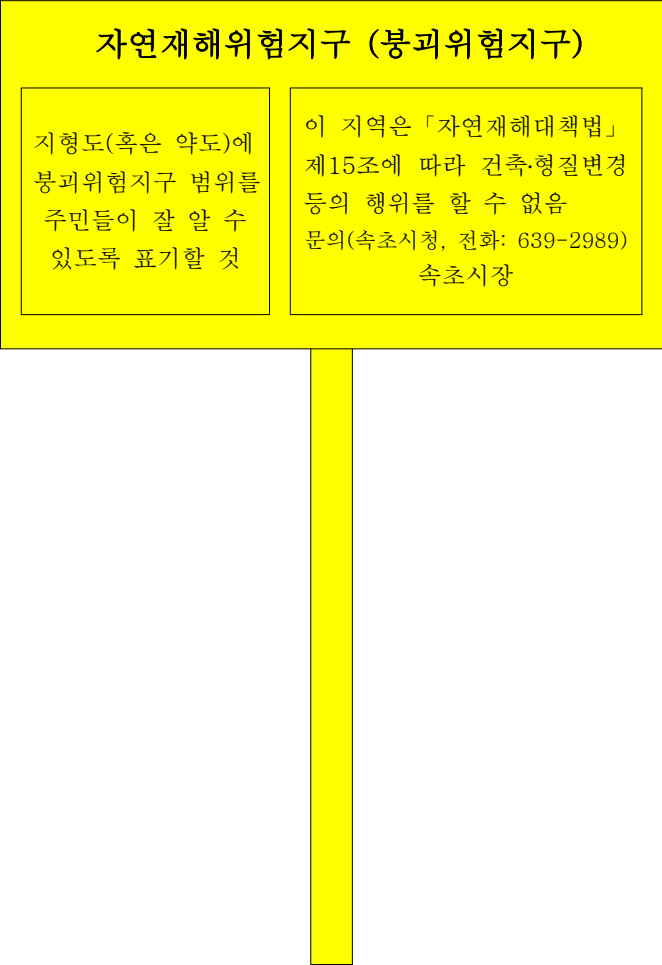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이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속초시청, 전화: 639-2989) 속초시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 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합 ○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 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 시 참조) ○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10월 18일

속초시조례 제2307호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

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폐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와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가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제9조 또는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하고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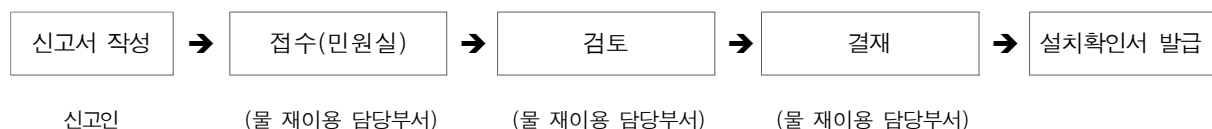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m³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오음(誤飲)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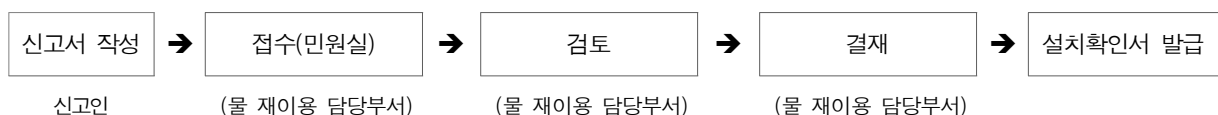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 대상 건축현장에 대하여 처분 조치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처분일 : 2012. 10. 10.)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장기간 공사중단되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4. 처분대상

대지위치	건축주 인적사항		건축물 규모	허가일자 (허가번호)	비고
	주 소	성 명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35번지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67, 513동 1401호 (잠실동,주공아 파트)	안 승 준 (1960년 2월 16일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1/지상3층 1,126.76㎡	2009.09.04. (2009-도시디자인과-신축허가- 제30호)	

5. 공고기간 : 2012. 10. 19. ~ 11. 02. (15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불복방법 안내

위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속초시를 경유하거나 강원도에 직접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부)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033-639-22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2. 10. 19.

속 초 시 장